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학 술 상 규 정

제정 1991. 03. 17

개정 2019. 04. 26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치과임플란트학에 관한 학술진흥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가 시행하는 학술상 수여를 위한 대상자 선발 시 공정성과 균형성 유지 및 학술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본 학회에 상설기구로 학술상위원회를 두고 회장 직속으로 한다. 그리고 학술상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3조 (학술상 구분)

학술상은 학술 대상과 신인 학술상으로 구분하며 수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학술대상은 치과임플란트학 분야에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 2) 신인학술상은 논문, 저서 등 연구 업적이 본 학회 및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제4조 (연구업적 심사)

수상후보자는 학술상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제5조 (학술상 연구업적 평가기준)

제출된 연구 업적 평가기준은 학술상위원회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6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의 최종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학술상위원회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8. 11. 15.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치과임플란트학을 진흥 발전시키기 위한 학술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내용과 학술상의 심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임무)

위원회는 학술상에 관한 사항과 수상후보자의 심의, 의결을 임무로 한다.

제3조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학회 비이사 1인 포함)
- 2) 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성원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장 학술상 선정

제6조 (수상자격)

치과임플란트학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치과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본 학회 회원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 (제출서류) 수상후보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신청서 (소정양식)
- 2) 수상대상 주논문 (별책첨부)
- 3) 연구업적 목록 (별책첨부)

제8조 (대상자 선발)

- 1) 논문 및 연구업적 내용이 학술상 수여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2) 논문 및 연구업적 내용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 3) 수여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사항에 비추어 적절한가의 여부

제9조 (학술 대상과 신인학술상 연구업적 평가)

학술 대상은 최근 10년간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예정인 논문 또는 저서 등의 연구업적 평점의 합계가 30점 이상을 득하여야 한다. 신인학술상은 연구업적의 합계가 10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연구업적 평점) 제출된 연구 자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1) 저서 : 단독 40점, 공저 40/저자수
- 2) 역서 : 단독 30점, 공역 30/역자수
- 3) 원저논문 : 단독 6점, 교신저자 및 제1저자 4점, 제2저자 이하 1점
- 4) 증례(치험례) : 단독 4점, 교신저자 및 제1저자 2점, 제2저자 이하 1점
- 5) 종설 : 단독 4점, 교신저자 및 제1저자 2점, 제2저자 이하 1점
- 6) 평점가산 ; 국외 및 국제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2점, 실험논문은 1점을 가산한다.

제11조 (수상후보자 결정)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수상후보자 2인을 순위 표시하여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12조 (상의 수여)

학술상은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13조 (수상자 미정)

위원회에서 기준평점에 달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학술상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